

문서관리번호	NI-경영-2211201
최종 수정일	2024.12.31
문서관리 담당	경영지원팀

(주)남일 공정거래 규정

2024.12.

공정거래 규정

제정 2022. 11. 01

개정 2024. 12. 31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임직원 모두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며 공정거래에 앞장 서 산업 및 국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

이 규정은 전 임직원 및 협력(도급)업체, 사내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협력업체에는 (주)남일과 각종 거래를 갖는 모든 회사가 포함된다.

제3조(공정거래 준수사항)

임직원은 공정거래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지 않는다.
- ②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③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가격 등을 조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④ 고객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⑤ 경쟁사의 고객이 당사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⑥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⑦ 거래상대방의 사업방식 및 사업활동에 간섭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⑧ 협력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지 않는다.
- ⑨ 입찰, 견적 등의 과정에서 담합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제 4조 부칙

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로 유효합니다.